

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상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.

발 의 자 : 이상기,백선아,전용균

김지훈,신민철,김현택

이창희,김영실

1. 제안 이유

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시텃밭 관리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(안 제5조)
- 나. 도시텃밭 관리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의3)
- 다. 위탁 취소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의4)
- 라. 그 밖에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가.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여를”을 “이바지함을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시장”을 “남양주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1. “도시농업”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,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, 곤충(양봉을 포함한다)을 사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경작인의 책무)”를 “(도시농업인의 책무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, “일부를 지원 할”을 “일부를 지원할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텃밭의 조성 및 지원사업
6.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지원사업

7.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
8. 생활원예활동, 도시농업공동체 사업
9.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
10.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도시텃밭 관리의 위탁) ①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조성한 도시텃밭(이하“도시텃밭”이라 한다)의 관리를 도시텃밭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도시텃밭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도시텃밭 활성화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·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의4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2.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
3. 수탁자가 거짓 진술, 허위 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

4.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탁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선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산업경제국장, 도시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생명정책과장”을 “환경국장, 도시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제6조제5항 단서 중 “전임자의 남은 임기”를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개회”를 “개의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「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, “일비”를 “일비 및 여비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위원의 위촉해제)”를 “(위원의 해촉)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을 해제”를 “해촉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담당팀장”을 “도시농업 업무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준용) 도시텃밭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
제4조(경작인의 책무) (생략)

제5조(도시농업 육성 지원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·단체·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② -----
각 호-----
-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도시농업인의 책무)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도시농업 육성 지원) ① --

----- 다음
각 호의 -----

----- 일부를 지원할 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텃밭의 조성과 지원사업

6.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지원사업

7.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

8. 생활원예활동, 도시농업공동체 사업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 략)

<신 설>

9.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
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

10.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사업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3(도시텃밭 관리의 위탁)

①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조성
한 도시텃밭(이하“도시텃밭”이
라 한다)의 관리를 도시텃밭 사
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법인이나
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
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도시텃밭을 위
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
다)는 도시텃밭 활성화 계획서
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
아야 한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
시농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
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·운
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
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
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

<신 설>

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의4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2.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3. 수탁자가 거짓 진술, 허위 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행위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
4.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탁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

제9조(회의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(생략)

제10조(위원회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의 위촉해제)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차기 회의에서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9조(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개회-----
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 수당) -----

「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---- 일비 및 여비
-----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-----

해촉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간사) ① -----

--- 도시농업 업무담당팀장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준용) 도시텃밭 관리 위탁
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

제15조 (생 략)

지 않은 사항은 「남양주시 사무
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
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6조 (현행 제15조와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「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1항의 제5호~제10호까지 신설과, 같은 조 3, 4의 개정에 따라 텃밭 관리위탁 및 신설되는 사업추진은 매년 배정되는 도시농업활성화지원(도비)를 활용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세출액은 연 1억 미만일 것으로 추계됨
- 그 외 위탁관리 및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-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장 조 석 제

☑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·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,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.